# 나눔융합전공대학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공회대학교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전공능력 중심의 전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한 나눔융합전공대학(이하 '전공대학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2.03.30.〉

**제2조(기능)** 전공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〈개정 2022.03.30〉

- 1. 전공교육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
- 2. 전공교육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
- 3. 전공능력 설정 및 성과 관리
- 4. 전공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
- 5. 전공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소속 학생 지도 및 관리
- 6. 전공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
- 7. 융합전공 개발
- 8. 기타 전공대학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## **제3조(조직 및 업무)** ① 전공대학에는 학장과 교육지원팀을 둔다. 〈개정 2022.03.30〉

- ② 학장은 전공대학을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전공교육과정 총괄 운영 및 관리
  - 2. 전공교과과정 교과목 개설
  - 3. 전공대학 소속 학생 지원 및 관리
  - 4. 기타 전공대학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
- ④ 전공대학 내에 인문융합자율학부, 사회융합자율학부,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, IT융합 자율학부를 설치하며, 각 학부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소속된다.
- ⑤ 전공교육과정 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) 전공대학에는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전공별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두며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 소위원회나 연구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3.30.>
- **제5조(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)** ①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장과 전공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학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④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- 1. 전공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전공교육 비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전공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전공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소속 학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전공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- 7. 융합전공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야 한다. 〈본조 신설 2022.03.30〉

#### 제6조(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) ①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는 전공별로 둔다.

- ②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는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소속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  - 1.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전공별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전공별 전공능력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전공별 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5. 전공별 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 - 6. 융합전공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에 따라 전공교육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야 한다. 〈본조 신설 2022.03.30〉
- 제7조(기타) 그 밖에 전공대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3.30.>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